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제2025-14호
2025년 2월 19일(수)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82호	2025년도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1
○	여수시 고시	제2025-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10
○	여수시 고시	제2025-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1
○	여수시 고시	제2025-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2
○	여수시 고시	제2025-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고시(반월리 851)	13
○	여수시 고시	제2025-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둔덕동 공동주택)	14
○	여수시 고시	제2025-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8
○	여수시 고시	제2025-94호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9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576호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공고	20
○	여수시 공고	제2025-578호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동문동 우리은행 뒤 도로개설공사)	22
○	여수시 공고	제2025-582호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개최결과 공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25-59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취소공고	25
○	여수시 공고	제2025-59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취소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5-59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취소공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25-594호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	28
○	여수시 공고	제2025-601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율촌면 도성마을 농어촌도로(313호선) 개설」	29
○	여수시 공고	제2025-605호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6기) 모집 공고	35
○	여수시 공고	제2025-618호	도시공원 무단점용물 자진철거(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40
○	여수시 공고	제2025-627호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	41
○	여수시 공고	제2025-631호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통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5
○	여수시 공고	제2025-638호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56
○	여수시 공고	제2025-64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 주식회사 영진건설	57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82호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 신청 모집 공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소 외부에 게시(부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유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의 불만 민원을 해소하고자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에 참여할 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여 수 시 장

1. 모집기간 : 2025. 2. 17. ~ 3. 4.(15일간)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주 또는 관련 단체
3. 사업기간 : 2024. 3. ~ 10. 31.
4. 보조사업 내용
   - ○ 총사업비 : 19,000천원(100,000원×190개소)
     - 지원액 : 100,000원/1개소(시비)
   - ○ 사 업 량 : 일반·휴게음식점 190개소(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곳)
   - ○ 사업내용
     -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에 옥외가격 표시
     - 영업소 입구, 주출입문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옥외가격 표시
5. 제출서류
   - ○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서(붙임 1)
   -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서식)

6. 제 출 처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위생지도팀)
7. 제출방법 : 방문, 우편(여수시 시청서4길 47, 식품위생과)
8. 사업자 선정 :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개별통지
9. 보조금사업 조건
   ○ 개별·단체사업자 공통
      - 보조사업자는 옥외가격 표시 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결과물을 영업장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한 비용은 음식점 영업주 본인이 부담한다.
      - 옥외가격표시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반드시 전품목 또는 5종 이상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영업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 대상자로부터 위생사업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단체의 경우
      - 옥외가격 표시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190개소-개별사업자 신청건) 음식점에 옥외가격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등 부대경비는 개소 당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옥외가격 표시는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관광지 주변, 장기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위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 옥외가격 표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 또는 점검 받아야하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은 여수시 기본계획에 따라 수정・추가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659-422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table>
<tr><td>단 체 명</td><td colspan="3"></td><td>대 표 자</td><td colspan="3"></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7">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7"></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7">○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 영업소 입구, 주출입문 등 손님에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옥외가격 표시
○ 옥외가격 표시 음식점에 최대 100,000원까지 지급</td></tr>
<tr><td>통 계 목</td><td colspan="3">민간경상보조사업비</td><td>지원근거</td><td colspan="3">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 rowspan="2">사 업 비</td><td colspan="3" rowspan="2">천원</td><td rowspan="2">당해사업
총사업비</td><td>시비</td><td colspan="2">천원(%)</td></tr>
<tr><td>자부담</td><td colspan="2">천원(%)</td></tr>
<tr><td rowspan="6">단 체
연락처</td><td>주소</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전화</td><td colspan="3"></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FAX</td><td colspan="3"></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실무자</td><td>직위</td><td></td><td>성명</td><td colspan="2"></td></tr>
<tr><td>전화</td><td></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able>

☞ **통 계 목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서상 통계목을 기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근거 : 운영비보조의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법령조항을 기재하고, 사업비보조의 경우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조항을 기재**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 . .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현황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table>
<tr><td rowspan="3">단 체
현 황</td><td>단 체 명</td><td colspan="4"></td></tr>
<tr><td>등록기관</td><td colspan="2"></td><td>등 록 일</td><td></td></tr>
<tr><td>상근직원수
(명)</td><td colspan="2"></td><td>금년도 총예산
(단위:천원)</td><td></td></tr>
<tr><td rowspan="5">사 업
개 요</td><td>사 업 명</td><td colspan="2"></td><td>사업기간</td><td></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단위:천원)</td><td>계</td><td>지원신청액</td><td>자부담</td><td colspan="2">자부담비율(%)</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사업대상</td><td colspan="5"></td></tr>
<tr><td>사업효과</td><td colspan="5"></td></tr>
<tr><td>사 업
내 용</td><td colspan="6"></td></tr>
<tr><td>사 업 비
산출내력</td><td colspan="6"></td></tr>
<tr><td>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td><td colspan="6">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td></tr>
<tr><td rowspan="3">전년도
보조사업
실 적</td><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사 업 비</td><td>천원</td><td>보 조 금</td><td>천원</td><td>자 부 담</td><td>천원(%)</td></tr>
<tr><td>사업효과</td><td colspan="5"></td></tr>
</table>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1) : 민간경상사업보조**

<table>
<tr><td>단체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명</td><td colspan="7">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지원사업</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2"></td><td>사업지역</td><td colspan="3"></td></tr>
<tr><td>사업대상</td><td colspan="2"></td><td>대상자수
(실인원수)</td><td colspan="3"></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사업내용</td><td colspan="2">세부사업명</td><td colspan="5">주 요 내 용</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예 산</td><td rowspan="2">총사업비</td><td rowspan="2">천원</td><td rowspan="2">보조금
신청금액</td><td rowspan="2">천원</td><td rowspan="2">자부담</td><td>회비(자담)</td><td>천원</td></tr>
<tr><td>기부금
(후원금)</td><td>천원</td></tr>
<tr><td rowspan="2">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2)</td><td>사업비</td><td>천원
%</td><td colspan="5">○ 제작비 : 천원 (%)
○ 사무관리비 : 천원 (%)
○ 급간식·교통비 : 천원(%)등 주요 비목</td></tr>
<tr><td>단 체
운영비</td><td>천원
%</td><td colspan="5">○ 인 건 비 : 천원 (%)
○ 공공요금 : 천원 (%)
○ 수 용 비 : 천원 (%)
○ 활 동 비 : 천원 (%)</td></tr>
</table>

1)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2)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보조사업(신규)

2. 사업목적

○ 손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음식점에 옥외가격을 표시

○ 옥외가격 공개 분위기 확산, 요금 자율경쟁 유도, 바가지요금 등 불만민원 해소

3. 사업추진방법

○ 음식 판매 위주 식당, 면적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식당, 관광지 주변 및 장기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위주로 190개 이상 음식점(150㎡ 미만) 선발

○ 옥외가격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새롭게 표시하는 영업장에 표시 비용 지원 (전품목 표시 또는 5종 이상 표시, 100,000원/지원기준)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대상 :　　음식점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모집 등

○ 홍보방법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점의 메뉴, 가격 등 정보를 쉽게 찾아 접근 이용

○ 가격 공개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로 지역물가 안정, 바가지요금 근절

○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이용증가, 지역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외식업 지부에 대한 기대 심리 및 이미지 향상으로 단체 회원 증가를 통한 위생지도 및 관리의 효율성 증가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3)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19,500	
음식점 옥외가 격표시 사업	자부담	계		500	
		단순 인건비	안내 도우미	300	□ 2명*50,000원*3일=300천원
		홍보비	홍보 플래카드 제작	200	□ 4장*50,000원=200천원
	보조금	**계**		19,000	
		물품 제작비	옥외가격 표시		□ 190개*95,000원=18,050천원
		활동비	급·간식비·교통비		□ 7명*9,000원*10회=630천원
		사무 관리비	사무관리비		□ 320,000원*1식=320천원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4)]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별지작성 가능

4)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단체현황

<table>
<tr><td>단 체 명</td><td colspan="6"></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한글 (한자)</td><td>실무책임자</td><td colspan="2">직위 성명</td></tr>
<tr><td>사무실 소재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전 화</td><td colspan="2"></td><td>E-mail 주소</td><td colspan="2"></td></tr>
<tr><td>홈페이지</td><td colspan="2"></td><td>FAX</td><td colspan="2"></td></tr>
<tr><td>창립년월일</td><td colspan="3"></td><td>회 원 수</td><td colspan="2">명</td></tr>
<tr><td>설립형태</td><td colspan="6">사단법인( ), 등록단체( )</td></tr>
<tr><td>상근직원수</td><td colspan="6">명(예:사무처장 O명, 총무 O명, 간사 O명)</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5">조직(임원)
※현회장: 대</td><td>직 위</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자택주소</td><td>전화번호</td><td>임기</td></tr>
<tr><td>회 장</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부회장</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총 무</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간 사</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재정상태
(단위:만원)</td><td>연도별</td><td>수 입</td><td>지 출</td><td>잔 액</td><td colspan="2">비 고</td></tr>
<tr><td>전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당해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시군지회
현황</td><td colspan="6">개 소 : , , , , ,
총회원수 : 명(여수시에 한함)</td></tr>
<tr><td>내년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td><td colspan="6"></td></tr>
</table>

※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총회 회의록 등)

여수시 고시 제2025 - 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고시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 인 자	
					성 명	주 소
2025-006 ('25. 2. 14.)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73-1번지 일원	화정면 제도리 산책로 정비공사	873.7	'25. 2. 14. ~ '55. 2. 13.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2025. 2. 1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48 (2023. 8. 19.)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삼산면 손죽리 산127번지 일원	739㎡	2025. 2. 14.	삼산면 광도 방파제 및 접안시설 정비공사

2025. 2. 1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69 (2023. 12. 28.)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삼산면 동도리 1144-11번지 일원	2,371㎡	2025. 2. 14.	삼산면 동도 죽촌항 정비 및 부잔교 이설공사

2025. 2. 1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 다 음 -

승인 (신고) 번호	승인 (수리) 일자	피허가자		공사내용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성명	주소		
2025 -00002	2025. 02. 13.	농업회사 법인 율촌보라 마을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원반월길 80, 2층	PVC 파이프 설치	2025. 2. 13. (2025. .2. 18.)

끝.

여수시 고시 제2025 - 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2-554(2022. 21. 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에 대한 취소 신청에 대하여 취소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14 .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둔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한국건설(주)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475-51 외 6필지
4. 사업개요
   가. 사업면적 : 26,135.00㎡
   나. 건축면적 : 5,197.3208㎡
   다. 연 면 적 : 30,765.9114㎡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주5동, 180세대
5. 취소 사유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신청에 따른 취소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바.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사.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중로	3	71	13~14	국지 도로	151	소2-139 둔덕동 475-6대	둔덕동 산164-4임	일반 도로	-	여고-193 (06.12.27.)	
변경	중로	3	71	12	국지 도로	137	소2-139 둔덕동 475-6대	둔덕동 산164-4임	일반 도로	-	여고-193 (06.12.27.)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71	중로3-71	• 연장 및 폭원 변경 - B=13~14m ⇒ 12m - L=151m ⇒ 137m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연장 및 폭원 환원

나.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둔덕정수장	둔덕동 475-6번지 일대	72,342.1	증) 43	72,385.1		

2) 수도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둔덕정수장	• 면적변경 - 면적72,342.1㎡ ⇒ 72,385.1㎡ 증) 43㎡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면적환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둔덕동 475-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71) 사업
   나. 명칭 : 둔덕동 연립주택 진·출입로 개설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3,588㎡
   나. 사업규모 : L= 151m, B=13~1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건설(주) 대표 정진이, 한국주택건설(주) 대표 정석우
   나.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상가동 201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7층

5. **사업시행기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6.12.31.

6. **실시계획인가 취소 사유:**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신청에 따른 인가 취소

여수시 고시 제2025-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055 (2024.10.8.)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김동철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176번지 ~ 화정면 개도리 산636번지 사이 공유수면	4,366.2㎡	2025.2.14.	배전철탑 이설공사

2025. 2. 17.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94호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7, 제39조의10에 따라 변경 승인되어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5-20호(2025. 1. 16.)]된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2. 18.

여 수 시 장

1.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 도서는 여수시 산업지원과(061-659-3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여수시 공고 제2025-576호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여수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등) 및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명단 공개)에 따라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2025. 2. 14.

여 수 시 장 (인)

□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가. 위 원 수 : 총 30명

나. 임 기 : 2024. 10. 18. ~ 2026. 10. 17.(2년)

다. 변 경 사 유 :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정부위원 2, 민간위원 1)

라. 위 원 명 단

연번	분 야	소 속	직 위(전문분야)	성 명	위원구분	비고
1	지자체 <4>	여수시	부시장	최정기	정부위원	**위 원 장**
2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당 연 직
3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		당 연 직
4		여수시	해양정책과장	문장곤		당 연 직
5	지역대표 <2>	여수시의회	시의원	이미경	민간위원	의회추천
6		여수시의회	시의원	송하진		
7	주민대표 <7>	화정면	화정면	이강채		
8		남면	금오도	강기천		
9		남면	연도, 안도	김대준		
10		삼산면	거문도	이강배		
11		삼산면	초도(대동리)	김동환		
12		삼산면	초도(의성리)	김용수		
13		삼산면	손죽도	김영진		

14	어업인 대표 <10>	여수수협	수협대표	김상문	민간위원	
15		거문도수협	수협대표	김효열		
16		나로도수협	수협대표	곽형권		
17		멸치권현망수협	수협대표	주승호		
18		대형선망수협	수협대표	한창은		
19		근해유망수협	수협대표	명영재		
20		전남정치망수협	수협대표	최길선		
21		제3구,4구잠수기수협	수협대표	하재규		
22		여수중앙연안자망	어민대표	여인남		
23		거문도선주회영어조합	어민대표	최용만		
24	발전사	발전사협의체대표	문도풍력	최상린		의결권없음
25	공익위원 <6>	정부위원 선정	해양지역전문가(남면)	김근평	공익위원	
26			해양지역전문가(화정면)	배중원		
27			해양지역전문가(삼산면)	최종순		
28		민간위원 선정	해양수산전문가	한경호		
29			해양환경전문가	임재균		
30			해상풍력전문가	손충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61-659-214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 - 578호**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동문동 우리은행 뒤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17.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동문동 우리은행 뒤 도로개설공사
2. 사 업 구 간 : 여수시 관문동 109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 고 기 간 : 2025. 2. 17. ~ 2025. 3. 4.(15일간)
5.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 고 내 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 협의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67)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 가능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 매도용 1부), 주민등록 초본1부(주소변경사항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인감도장

7.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여수시 관문동	1094-1	대	22	여수시 화양면 화*리 7*0	서*호			
3	여수시 관문동	1027-1	대	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 1*4동 1**2호(송천동*가, 주공아파트)	진*성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8. 기타 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4-582호

공 고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4.

여 수 시 장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결과

1. 공고기간 : 2025. 2. 14. ~ 2. 21.(14일간)
2.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내역
   - 회 의 일 : 2024. 2. 10.(월)
   - 희의내용 : 1.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보고
     2. 풍황계측기 허가신청 자문
   - 회의록 : “붙임” 참조
3.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061-659-2140)

여수시 공고 제2025-59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취소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공고한 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를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위예비가격 작성 착오로 인해 취소 공고합니다.

2025. 2. 14.

여 수 시 장

1.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25-431호 (나라장터 R25BK00614239-001)

2. 사 업 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3. 취소공고일 : 2025. 2. 14.(금)

4. 취소사유 : 상위예비가격 정정에 따른 취소 ※상위예비가격 수정 후 재공고 예정

여수시 공고 제2025-59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취소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공고한 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를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위예비가격 작성 착오로 인해 취소 공고합니다.

2025. 2. 14.

여 수 시 장

1.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25-446호 (나라장터 R25BK00616274-002)

2. 사 업 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3. 취소공고일 : 2025. 2. 14.(금)

4. 취소사유 : 상위예비가격 정정에 따른 취소 ※상위예비가격 수정 후 재공고 예정

여수시 공고 제2025-59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취소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2024. 1. 4.)」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공고한 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감리자(소방) 모집공고를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위예비가격 작성 착오로 인해 취소 공고합니다.

2025. 2. 14.

여 수 시 장

1.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25-445호 (나라장터 R25BK00616197-004)

2. 사 업 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3. 취소공고일 : 2025. 2. 14.(금)

4. 취소사유 : 상위예비가격 정정에 따른 취소 ※상위예비가격 수정 후 재공고 예정

여수시 공고 제2025-594호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 시공업체 선정결과

연 번	업 체 명	대표	사업장 위치	비 고
계	3개소			
1	정상냉동엔지니어링	이상배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148	
2	부일냉동공사	서윤영외1	여수시 신월로 769(봉산동)	
3	대한냉동산업	김수동	여수시 무선1길 11(선원동)	

□ 기타문의: 농산물유통과 유통시설팀 (☎061-659-4515)

여수시 공고 제2025-601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율촌면 도성마을 농어촌도로(313호선)개설」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88조는 의제 처리함.

2025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1. 도로 노선지정의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번호)	도로구간		연장 (㎞)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m)		지정(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포장 너비	
율촌면	농도	덕애선 (율촌313)	율촌면 신풍리 777-14	율촌면 신풍리 1	2.9	-	-	-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노선지정
			(율촌면 신풍리 11-19)	(율촌면 신풍리 40-68)	(0.363)	-	(8.0)	(8.0)	

※( ) : 금회 공사구간

2. 사 업 명 : 율촌면 도성마을 농어촌도로(313호선)개설

3.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

4. 사업내용 : 도로개설 L=0.363㎞, B=8m

5.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도로과)

6.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99	8	국지도로	748	율촌면 신풍리 11-19답	율촌면 신풍리 40-68대	일반도로	-	여고-487 21.11.11.	
변경	소로	2	1499	8	국지도로	363	율촌면 신풍리 11-19답	율촌면 신풍리 40-68대	일반도로	-	여고-487 21.11.11.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1499	소로2-1499	· 도로 선형 변경 및 연장 정정 L = 748m → 363m 감) 385m A = 2,934㎡ → 4,120㎡ 증) 1,186㎡	· 도로 연장 오류사항 정정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기정 도로 노선 조정 및 법면 부 포함에 따른 도로 면적 변경

7. 설계도서 등 관계도서의 열람 :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569, 사업 시행 기간 내)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붙임 참조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2,0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여수시 율촌면	11-19	답	7,312	785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신풍리 1				
2	〃	18-12	임	35,981	1,152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신풍리 1				
3	〃	11-15	답	623	97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신풍리 1				
4	〃	11-18	답	23	10	박*술	신풍리 1				
5	〃	21-45	전	162	143	박*술	신풍리 1				
6	〃	21-50	전	608	496	신풍리도성 새마을회	신풍리 1				
7	〃	11-26	답	459	74	이*영	신풍리 37-97				
8	〃	21-43	전	112	86	김*복	광주북구삼각동637 우미타운 101-1211				
9	〃	21-42	전	202	75	예*주	경북경산시대학로12길 24, 102동805호				
10	〃	21-41	전	172	88	김*진	산돌길 77	여수축 산업협 동조합		근저 당권 설정	
11	〃	21-40	전	102	60	박*심	신풍리 1				
12	〃	11-33	목	162	37	양*자	산돌길 79-1				
13	〃	21-38	전	30	30	이*도	신풍리 1				
14	〃	11-34	답	486	2	이*자	신풍리 1				
15	〃	11-36	답	79	3	신풍리도성 새마을회	신풍리 1				
16	〃	11-37	답	410	100	최*자	산돌길 81				
17	〃	21-37	전	16	16	강*호	신월동60 금호아파트 17-303				
18	〃	22-10	임	3	3	강*호	신월동60 금호아파트 17-303				
19	〃	22-9	임	66	64	신풍리도성 새마을회	신풍리 1				
20	〃	11-39	목	212	45	정*성태 외 2인	도성길59-1				
21	〃	11-199	답	2,298	131	노*자 외 2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1-161	여수축 산업협 동조합		근저 당권 설정	
22	〃	1340-13	도	1,741	24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2/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23	〃	36	대	280	127	이*남	산돌길108-33				
24	〃	36-1	전	281	210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25	〃	34-40	임	795	119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26	〃	37-109	임	3,565	4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27	〃	40-75	임	4,119	54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28	〃	34-34	대	198	15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29	〃	34-23	대	307	16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30	〃	40-68	대	103	54	신풍리도성새 마을회	신풍리 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1/2)

한전주

연 번	소재지	구분	단위	수량	비고
1	신풍리 18-12	한전주	주	2	
2	신풍리 11-19	한전주	주	2	
3	신풍리 21-45	한전주	주	2	
4	신풍리 11-26	한전주	주	1	
5	신풍리 21-43	한전주	주	2	
6	신풍리 21-41	한전주	주	1	
7	신풍리 21-50	한전주	주	1	
8	신풍리 21-38	한전주	주	1	
9	신풍리 11-39	한전주	주	1	
10	신풍리 11-199	한전주	주	3	
11	신풍리 34-40	한전주	주	2	
12	신풍리 37-109	한전주	주	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2/2)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율촌면 산돌길 83-1	본체	블럭/스레트	㎡	52.80	이순남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돌길 108-33		
		부속	슬라브	㎡	34.3				
			블럭시멘트	㎡	40.26				
		콘크리트깨기	무근	㎡	57.75				

【농어촌도로(율촌313호선) 노선 지정도】

여수시 공고 제2025- 605호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제5기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8조에 의거 제6기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여 수 시 장

□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기간 : 2025. 2. 17. ~ 3. 4.(15일간)

○ 모집인원 : 5명

○ 모집분야 : 조경, 산림(도시숲 등), 경관, 도시계획 등

□ 자격요건

○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타 위와 유사한 수준의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경력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 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2. 17. ~ 3. 4.

○ 접 수 처 : 여수시 공원과 공원조성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061-659-4623)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
- 이메일 : future486@korea.kr

○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 방문 및 이메일 접수(접수여부 유선 확인)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 제출서류

○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기타 사항

○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 · 관리기관	비 고

위원회 활 동	위촉기간	기관명	위원회 명칭	주요기능

기타사항	※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위와 같이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작성자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 붙임 2 >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지원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여수시는 여수시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2년(해촉 시 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2년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해촉 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여수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시 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5-6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17.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도시공원 무단점용물 자진철거(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17. ~ 2025. 3. 9. (20일간)
3. 처 분 명 :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4. 공고대상(처분대상)

위 치	소유자	대상 또는 종류	수 량	실행일
여수시 여서동 237(여문공원)	미 상	무단점용물	1점	2025. 3. 10. 14시 이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 2025년 1월 9일, 여수시 공원과-42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2025년 1월 29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원상복구(자진철거)하시기를 바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은 의무자의 부담으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여수시 공원과 근린공원관리팀(061-659-4629)

여수시 공고 제2025 - 627호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

1. 사업비 및 사업물량

o 사업비/사업량 : 금 500백만원 / 사업량 : 2~3척(예산범위내)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o 공고기간 : 2025. 2. 18.(화) ~ 3. 5.(수)

o 신청기간 : 2025. 3. 6.(목) ~ 3. 24.(월)

- 신청마감 일시 : 2025. 3. 24.(월) 18:00까지

o 신청장소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담당 : 정용운 061-659-3920)

3. 사업대상 업종 및 우선순위

가. 대상업종 :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들망

나. 우선순위 : 선령, 연령, 법령준수정도(위반횟수, 위반정도), 조업실적(조업일수), 톤수 등의 기준으로 결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o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3) 어선원부 1부
4) 선체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
5) 어선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 1부.**(해양경찰서의 출입항신고소나 파출소 확인을 받은 자료에 한함, 요구기간:2023. 3. 6. ~ 2025. 3. 5.)**

※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감척목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연간기준은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면세유 구입실적 1부
(해당 수협장 확인 요함, 요구기간:2024. 3. 6. ~ 2025. 3. 5.)

7) 수협 위판실적 및 기타 판매확인 서류 1부

8)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9)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우리 시)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자도 신청가능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1일 2시간 기준)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 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여수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 조업실적 산출(경유 2시간, 가솔린 1시간 기준으로 함)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여수시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1)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4)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유효한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 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6)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자) 감척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이 도래되지 않은 자

다. 선령

o 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6.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표(안) >

	구분	가중치(a) '25년	구간별 점수 계산(b)	
1	어선의 선령	0.25	35년 이상	100
			30년 이상 ~ 35년 미만	80
			25년 이상 ~ 30년 미만	60
			20년 이상 ~ 25년 미만	40
			15년 이상 ~ 20년 미만	30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
			10년 미만	10
2	연령	0.25	75세 이상	100
			70세 이상	70
			65세 이상	40
			65세 미만	10
3	법령준수정도(위반횟수) -3년 이내 위반횟수 합산- *** 취소는 3회 이상 점수 적용** *** 경고는 제외**	0.15	없음	100
			1회	60
			2회	30
			3회 이상	10
4	법령준수정도(위반정도) -3년 이내 정지처분일수 합산- *** 취소는 60일 초과 점수 적용** *** 경고는 제외**	0.15	없음	100
			20일 이하	80
			20일 초과 ~ 30일 이하	60
			30일 초과 ~ 45일 이하	40
			45일 초과 ~ 60일 이하	20
			60일 초과	0
5	조업실적(조업일수) *** 평균 조업일수 적용**	0.10	140일 이상	100
			120일 이상	80
			100일 이상	60
			80일 이상	40
			60일 이상	20
6	어선의 규모 (톤수)	0.10	$\frac{(\text{해당어선의톤수})}{(\text{해당업종의평균톤수})} \times 100(\%)$	C
	합계	1.00	최대 합산 점수(가중치×최고 구간 점수)	100

*** C는 등급구간별 점수를 따른다. '평균'은 자율감척 신청자의 평균으로 한다.**

⑴ 어선의 선령·규모(본선 기준), 연령의 기준 시점은 '25. 3. 6.이며, 조업실적(조업일수)은 최근 2년간('23. 3. 6~'25. 3. 5.) 실적의 평균으로 한다. 법령준수정도 적용 기간은 최근 3년간('22. 3. 6.~'25. 3. 5.)으로 한다.

※ 조업일수는 해경 출입항 신고기록으로 산출

⑵ 대상자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합산점수로 높은 순으로 산정하되,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①선령 > ②연령 > ③위반횟수 > ④위반정도 > ⑤조업실적(조업일수) > ⑥규모(톤수)

순으로 선정한다.

[등급구간별 점수 계산표] - 톤수

등급 구간 (%)	점수
140 이상	100
120 이상 ~ 140 미만	85
100 이상 ~ 120 미만	70
80 이상 ~ 100 미만	55
60 이상 ~ 80 미만	40
60 미만	25

7.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어선감척 대상자는 폐업지원금·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사후관리 이행사항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 · 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o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9.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준가격

가. 5톤이하 어선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연안 어업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들망	59,042	59,042	59,042	59,042	91,574

나. 5톤초과 어선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 지급

※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급합니다.**

10. 어선감척 절차

①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여수시)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② **어선감척 잠정사업대상자 선정**(여수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③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여수시장→ 신청자)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교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④ **감척대상 어선 선체 사실 확인**(잠정사업대상자)

⇒ 여수시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뢰

⇒ 선체 사실 확인 검사 수수료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⑤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잠정사업대상자)

⇒ 여수시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⑥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등 지급(여수시청)

⇒ 최종사업대상자는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규칙 별지 5,6호서식)

⇒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 또는 감정평가액 지급

11. 기타

가. 사업 신청자는 신청안내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나. 선체확인 비용,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여수시)가 사업완료 후 정산지급합니다.(사업을 포기할 경우 비용의 100%를 사업자가 부담)

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수산경영과(☎ 정용운 659-39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게재 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안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025. 2. 18.

여 수 시 장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어선·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서식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면허)에 관한 사항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 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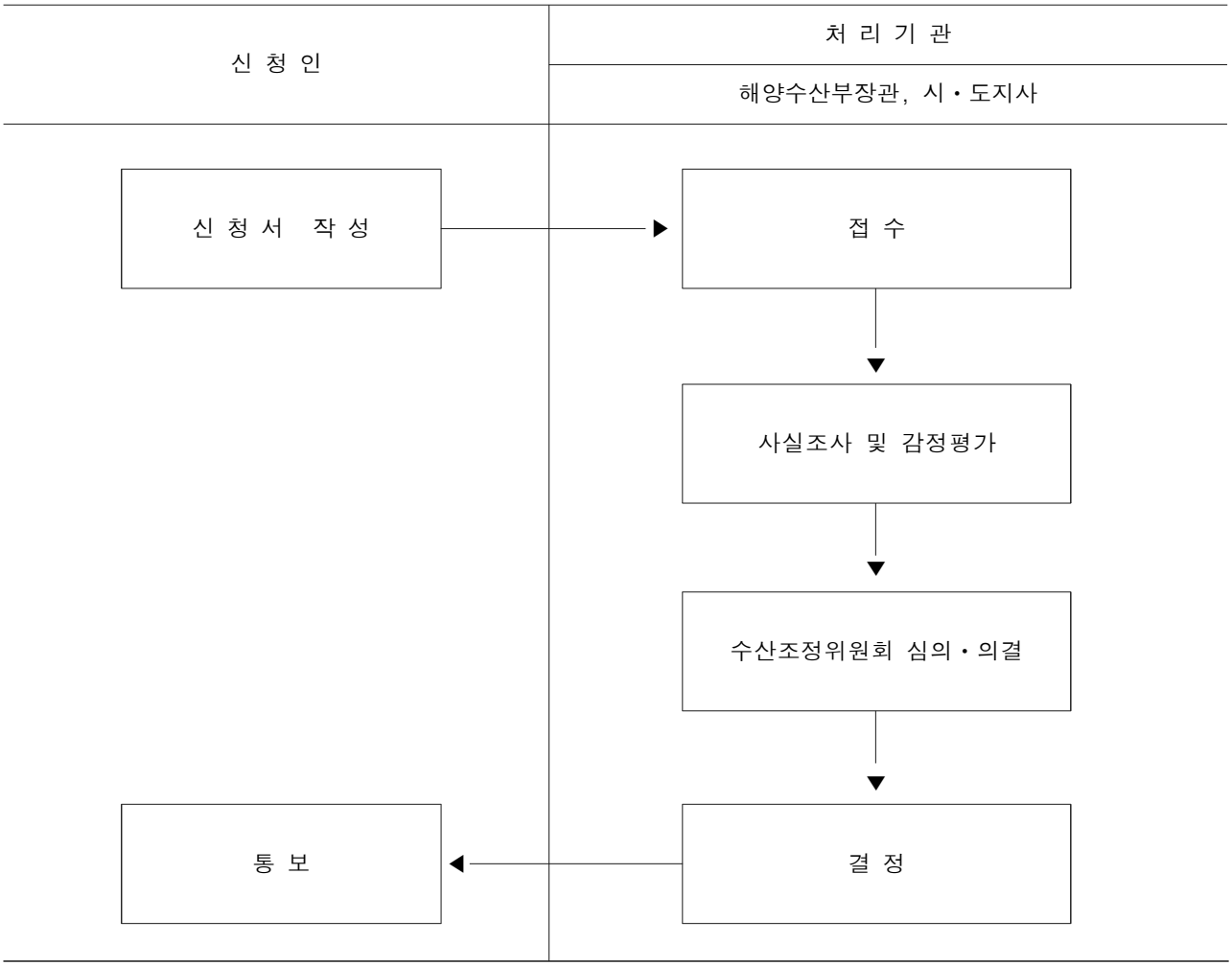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7. 11.>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면허)에 관한 사항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그 밖의 사항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확인 및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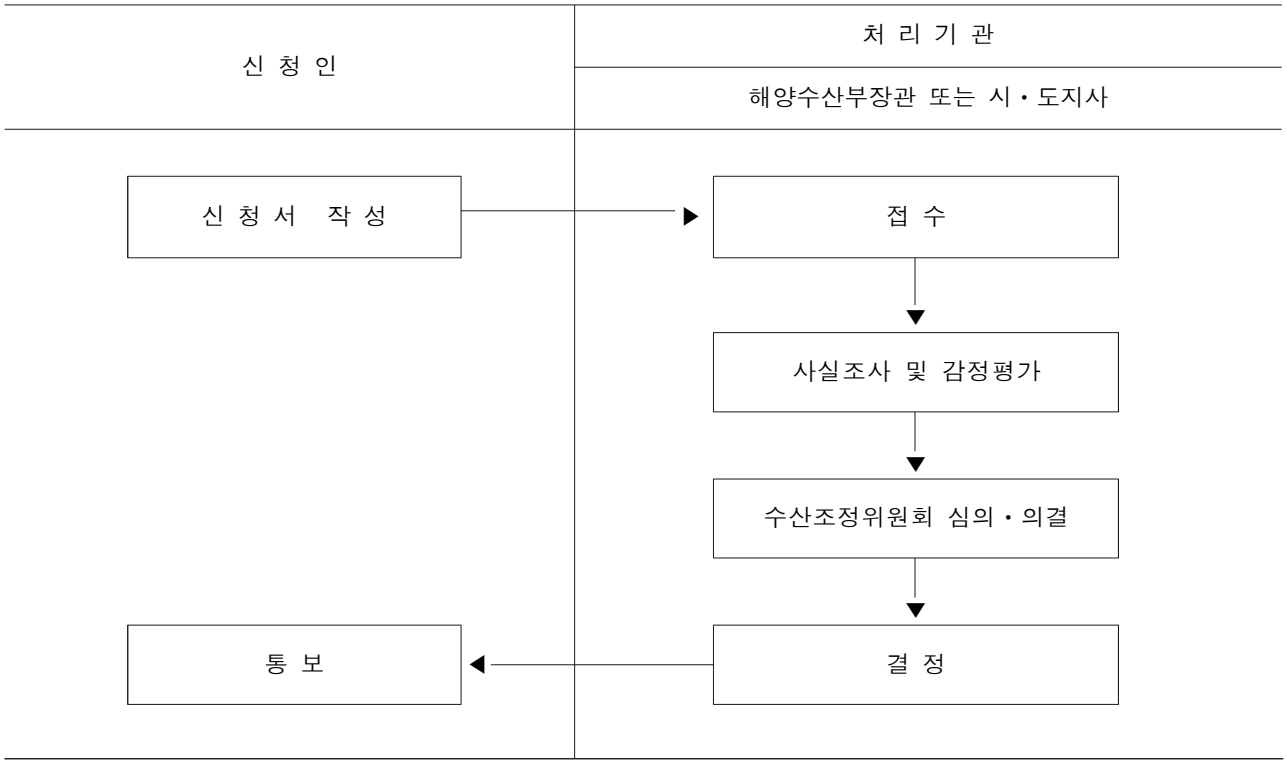

[여수시 공고 제2025-631호]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통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2조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제5,6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통지근거 :「주택법」제12조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제5,6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연번	조합명	송달주소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1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시청동1길 17, 3층 304호	2025. 2. 4.	2025. 2. 13.	수취인 불명
2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 2단지	여수시 시청동1길 17, 3층 304호	2025. 2. 4.	2025. 2. 13.	수취인 불명
3	공화동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여수시 동문로 102, 2층	2025. 2. 4.	2025. 2. 13.	폐문 부재
4	덕충 테라스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부재	2025. 2. 4.	2025. 2. 13.	폐문 부재
5	율촌 조화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15, 상가동 3층 1호	2025. 2. 4.	2025. 2. 13.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5. 2. 18. ~ 2. 24.(7일간)

5. 게시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061-659-4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638호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부. 끝.

2025년 2월 19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여수시 공고 제2025-64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식회사 영진건설 (정*일)	전남 여수시 대평길 133-12(해산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 10-276)	206211-0003919	**2025.2.18.**	사업포기 (면허반납)

2. 공고 기간: 2025. 2. 18. ~ 2025. 3. 4.(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